

심사보고서

【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】

의안 번호	503
----------	-----

2024. 9. 12.
자치행정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4. 8. 23. / 원주영 의원 등 12명
나. 회부일자 : 2024. 8. 23.
다. 상정 및 의결일자 : 2024. 9. 12.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- 행정수요의 다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민간위탁 사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·정비함으로써 위탁사무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위임사무 민간위탁에 대한 위임기관의 승인사항을 정비(안 제6조제1항)
- 의회 동의 예외 규정을 신설(안 제6조제3항)
 - 정부공모사업 참여 등 수탁기관이 미리 지정되어 있는 경우
- 위탁사무 성과평가에 대한 세부규정을 신설(안 제21조)
-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용어를 정비

3.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조공선)

-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기능의 복합화와 다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민간위탁 사무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발의된 안건으로서,

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민간위탁 사무의 업무 효율성과 신뢰성을 강화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판단됨

4. 질의·답변 요지

- 회의록 참고

5. 토론요지

- 없음

6. 심사결과

- 「원안가결」

7. 소수의견 요지

- 없음